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도시건설위원회(도시관리국)

의안번호	235
제 출 자	임현주 의원 외 6명(2023. 11. 7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이선하

1. 제안이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일부개정(법률 제19469호, 2023. 6.13 공포)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비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·운영 비용을 추가
(안 제4조 및 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¹⁾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(2023. 11. 7. ~ 2023. 11. 13.) : 의견없음

1)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(관리비용 등의 지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,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·진단에 필요한 비용(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을 포함한다)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<개정 2015. 12. 29., 2023. 6. 13., 2023. 10. 24.>

4. 검토의견

가. 개 요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【시행 2023.12.14., 2023.6.13. 일부개정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비용을 포함하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조 및 별표 1)

나. 검토의견

【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등 개선 비용 지원 근거 마련】

(안 제4조 및 별표 1)

-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·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
-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지원에도 불구하고,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여전히 미비한 편이고, 최근 몇 년간 언론 등을 통하여 경비원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보도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었음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경비 시설 등에 냉난방 설비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례상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,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, 또한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